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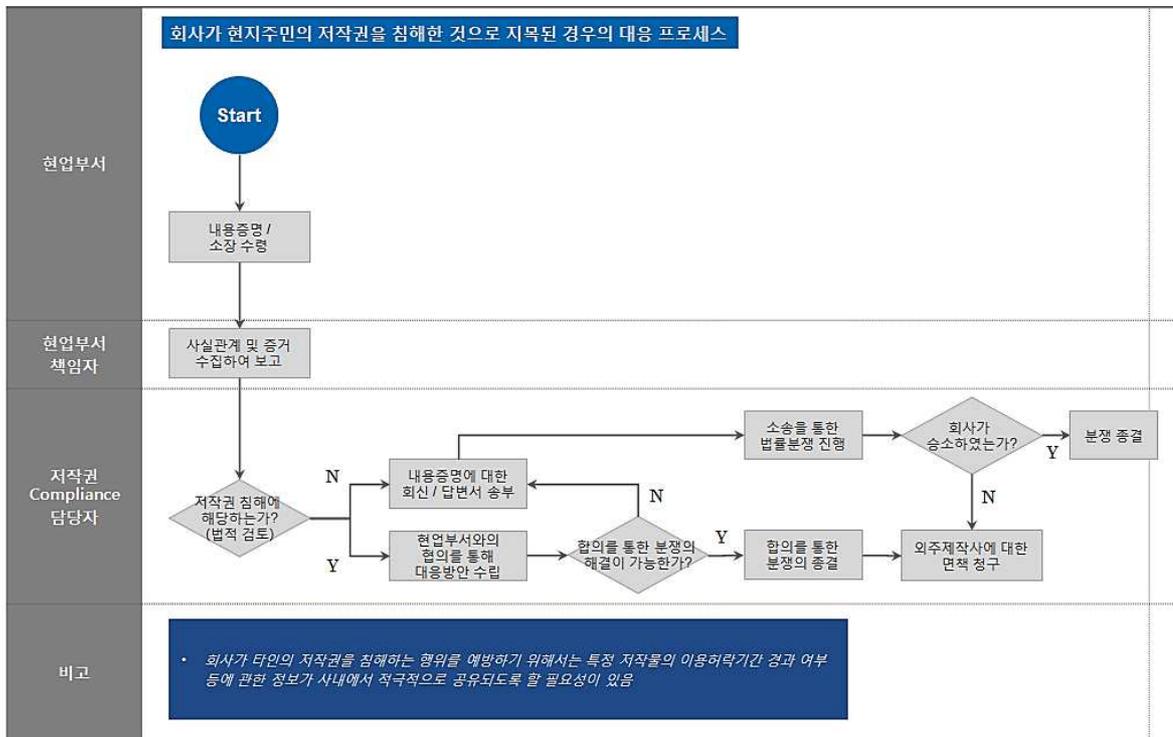
지적재산권 보호지침

제정 2020. 7. 15.

I. 평가 기준

1	기관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.
2	기관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.
3	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,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.

II.



III. 평가기준 별 세부지침

1. 사전 조사 단계

평가기준 1: 기관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.

번호	목록	확인(O/X/해당없음)
1-1	웹상에 신문기사나 뉴스동영상의 링크와 제목만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를 스크랩하는 것은 기사작성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	
1-2	대한체육회에서 외부에 사내강의 의뢰하는 협조를 보낼 때 지적재산권 관련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요청할 것	
1-3	강의 관련 담당직원은 임직원을 상대로 한 강의자료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	
1-4	내부에서 사내강의 자료 제작 시, 사내강의에 사용될 자료의 제작·진행 등에 관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법무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할 것	
1-5	외부업체를 이용하여 저작물 작성 시 계약서에 제3자의 지적재산권(저작권 포함) 침해시 대한체육회에 대한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	
1-6	외부업체가 자력이 없거나 도산하는 경우에는 면책조항이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, 가급적 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	
1-7	외부강사 초빙 시 해당 강사의 교육자료나 촬영영상(초상권 등)을 사내 목적에 한해 이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받을 것	
1-8	대한체육회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를 촬영한 사진이라도 사진작가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	

	이용하기 전에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	
1-9	프리웨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혹은 라이선스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폰트 프로그램 등을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함부로 설치하지 않을 것	
1-10	타인이 촬영한 사진을 이용할 경우, 그 사진이 촬영의 구도·촬영·콘셉트·촬영방법 등에 특이한 점이 있는 ‘이미지 사진’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할 것	
1-11	타인의 초상·저작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홍보책자 등 향후 회사가 추가로 복제·배포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료의 제작을 의뢰할 때부터 저작권(초상권 포함) 양도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할 것	

2. 일반적인 지적재산권 확인(이용 시)

평가기준 2: 기관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.

번호	목록	확인(O/X/해당없음)
2-1	외부업체가 제작한 결과물을 이용하기 전 해당 결과물에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것	
2-2	공모전 당선작의 저작권 양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선작을 이용할 때 창작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작품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는 식으로 변형하여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(저작인격권 침해 주의)	
2-3	공모전의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변형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, 이에 대하여 별도로 허락을 받도록 유의할 것	

2-4	공모전의 목적 및 당선작의 성격에 따라서는 변형이용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을 수 있으나, 그러한 사정만으로 창작자가 당연히 변형이용에 동의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 (추가 동의 필요)	
2-5	외부강사가 사내강의를 위하여 만든 자료의 저작권이 당연히 회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, 강의자료 이용시 회사 임의로 인쇄·게시·배포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할 것	
2-6	강의를 수강하는 내부교육생들에게 교육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 것을 유념시킬 것	
2-7	사내에서 외부 저작물의 이용허락기간 경과 여부 등에 관한 정보가 적극적으로 공유되도록 할 것	
2-8	타인의 동의 후 타인의 저작권·초상권·상표권 등이 포함된 대한체육회 저작물을 타 업체에게 이용허락할 때에도 타 업체의 당사 저작물 이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(초과범위 이용 자제)	
2-9	기념품 등과 같이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조·배포하는 물건의 경우에도 제3자의 저작물 침해 가능성을 특별히 유의할 것(저작권 침해행위 요건에 영리 목적 여부가 문제되지 않음)	
2-10	경기장이나 사내 외에 미술품 혹은 그 복제·모사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것	
2-11	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편집하거나 일부를 짜깁기하여 재생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, 임의로 편집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	
2-12	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, 라이선스가 확인되지 않은 폰트 프로그램을 등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	

2-13	대한체육회의 대회 등 행사장에서 음악, 동영상 등을 재생하고자 하는 경우,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매한 판매용 음반, 판매용 영상저작물만을 재생할 것	
2-14	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주문제작하거나 편집하여 제작한 음반을 재생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은 MP3 파일, 스트리밍 서비스 받은 음원 등을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	
2-15	원본저작물을 축소한 이미지 등을 클릭하면 원본 저작물이 저장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, 원본저작물을 축소한 이미지가 원본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와 화질을 갖도록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(사내 게시판의 게시물이 단순히 URL 주소를 표시하여 링크만 제공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)	
2-16	특허, 상표, 저작권, 영업비밀,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는 표지·성과물, 컴퓨터프로그램, 초상권, 퍼블리시티권 등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유형의 결과물들이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숙지할 것	

3. 협의 및 적절한 보상 제공

평가기준 3: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,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.

번호	목록	확인(O/X/해당없음)
3-1	지역주민을 상대로 공모전 진행 시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, 이를 반드시 표시하고 당선작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이 저작권 양도의 대가로 적절한지 유의할 것	

3-2	공모전의 당선작을 변형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,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하여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합의하고,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적절히 지급할 것	
3-3	외부강사 등의 강의자료를 회사가 직접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	
3-4	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이용허락계약을 통해 저작물 등 지적재산권이 포함된 성과물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허락기간과 이용허락의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할 것	
3-5	해당 자료를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디지털화하는 등으로 변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여부를 포함하여 별도로 협의할 것(별도 표시가 없을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봄)	
3-6	회사가 인터뷰에 응하여 작성된 기사나 뉴스라도 회사가 저작권을 갖지 않으므로, 이를 회사 홈페이지에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뷰에 응할 당시에 이용허락을 받도록 할 것	